

전주지방법원 2022. 9. 20 선고 2021가단260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6.

판 결 선 고 2022. 9. 2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19. 10. 1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은 2017. 10. 31.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로부터 15,000,000원을 대출한 후 2018. 1. 12.부터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2018. 11. 16. 소외 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다.

나. 원고는 2019. 8. 2.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712378 양수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, 2021. 10. 21. 기준 양수금 채권액은 대출 원금 14,543,439원을 포함하여 이자 및 가지급금 등 합계 30,429,273원이 남아 있다.

다. C은 모(母)인 피고와 2019. 10. 11. 사망한 부(父) 망 E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 사이의 자녀로서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피고는 3/7 지분, C과 F는 각 2/7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라. 피고는 C 및 F와 2019. 10. 1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가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20. 9. 18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19. 10. 11.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및 G은행과 H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,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/9 지분 외에 전주시 완산구 I 대 1268㎡의 1/2 지분, 전주시 완산구 J 도로 8㎡의 1/2 지분 및 전북 완주군 K 임야 11207㎡의 1/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, 위 각 적극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C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 있고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위 적극재산을 실질적인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L기관 및 M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의 성립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이러한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인 2/7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 사건 분할협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, 나아가 채무자 C의 모친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

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인바, 피고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여 취소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2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.

한편 사해행위 후 취소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원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넘는 부분이 원상회복 될 수는 없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만 가능하지만, 이 법원의 N조합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1. 1. 4. 해지되어 2021. 1. 5. 말소된 N조합의 채권최고액 52,000,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7. 4. 11. 이미 21,600,033원 전액 상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원래 책임재산을 초과하여 반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성식